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07

발의연월일: 2022. 11. 4.

발 의 자:김상훈·강기윤·강대식

김선교 · 엄태영 · 이명수

이인선 · 최연숙 · 태영호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생산가능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인 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 우를 포함함)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① 2025년 12월 31 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임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3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등에 대한 감면) ①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	
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	
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	
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u>2025년 12월 31일</u>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	
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	
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u>2024년 12</u>	<u>2025년 12</u>
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	월 31일
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	
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이하이 조에서 "창업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이 조에서 "창업기업"이라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

<u>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u> <u>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u> <u>감한다.</u>

-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 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임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

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